예 산 총 칙

2026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08,616,783	15,258,503
일반회계	472,867,568	14,186,027
특별회계	35,749,215	1,072,476
기타특별회계	35,749,215	1,072,476
상수도사업특별회계	15,730,632	471,919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35,732	13,072
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	1,231,746	36,952
수질개선특별회계	15,681,258	470,438
하수도특별회계	2,089,300	62,679
주차장특별회계	580,547	17,416

제 2 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) "해당없음"

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,500,000천원으로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